

# 「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발 의 자 : 박세채 의원 외 16명

### 2. 제안이유

- 차량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정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을 확대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공영주차장의 경형자동차 설치 의무 삭제(안 제8조제6항 삭제)
-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(안 제14조)
  -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최소 기준 변경(30대 이하→20대 이하)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범위 확대 신설(별표 2)
  - 다자녀가정(당초 50% 감면 → 전액 감면)
  - 다른 시군에서 구미시로 전입하는 자〔전액감면/1년간(최초1회)〕
  - 구미시 장학재단 고액기탁자(개인) (전액감면/1년간)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,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    타 : 조례안 예고(2023. 5. 3. ~ 5. 8.)결과 의견서 7건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○ 본 조례안은

- 공영주차장의 경차전용주차구획의 의무설치 규정을 삭제하고,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##### ○ 검토 결과,

-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
- ‘23.3월 기준 구미시에 등록된 승용차는 모두 189,837대이며 이 중 경차는 22,638대로 약 12%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경차전용 주차장의 의무설치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